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총무과	1

(2013. 1. 16)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명 금 길]

1. 안 건 명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년 1월 8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가. 2013년 1월 11일

나. 의안번호 : 13-3

4. 관련근거

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9846호)

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63호)

다.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5137호)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동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우리 구 차원에서 산업 · 경제 · 문화 · 학술 · 체육 · 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1) 안 제2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와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산업·경제·문화·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안 제3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구의 출연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주의적 사업,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함.

(5)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관련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함.

(6)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7)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관련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검토의견]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남북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2005.12. 29 (법률 제 7763호)로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 강원도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고 뒤를 이어 경기도를 포함한 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남북교류를 통한 화해와 협력에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동 조례를 제정하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에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 구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다양한 남북교류를 통해 남북 동질성 회복과 구민들의 평화통일 의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